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State Library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곽 철 완(Chul-Wan Kwak)*

목 차

1. 서 론	3.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 특성
1.1 필요성 및 목적	3.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1.2 주 도서관에 대한 연구	3.2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2. 주 도서관 현황	4.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 서비스 고려 사항
2.1 운영주체	4.1 서비스 방향
2.2 장서	4.2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2.3 이용	4.3 공공도서관 지원 서비스
2.4 서비스 거점	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
2.5 서비스 인력	
2.6 예산	5.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 미국의 주 도서관의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통계자료와 주 도서관 웹 페이지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주 도서관은 주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만 핵심 기능은 지역 도서관에 대해 예산,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주 단위의 역사 및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며,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며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e library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consider what services are needed for regional librarie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library statistics and library web pages. The analyses particularly focused on examining the residential service and library service of state libraries. The analyses revealed that the state libraries provide funds, services, and training to local libraries, but the service levels are varied among states. State libraries provide state historical information and genealogy information to residential users, and focus on the information needs for handicapped people. Based upon the analysis of U. S. state libraries, Korea regional libraries would provide services different from local public libraries. Also, regional libraries would be operated based up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키워드: 지역대표도서관, 주 도서관, 주 도서관의 서비스, 공공도서관 지원, 지역정보센터

Regional Library, State Library, State Library Service, Public Library Support, Regional Information Center

*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ckwak@ka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5월 15일
제재확정일자 2007년 6월 17일

1. 서 론

1.1 필요성 및 목적

2006년 '도서관법'(일부개정 2006. 12. 20 법률 제8069호)이 통과됨에 따라 도서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중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과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지역대표관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지역대표관은 도서관협력망의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협력망 운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서관법'은 지역대표도서관을 그 지역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 및 제공하는 중심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며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모습도 갖추고 동시에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갖춘 도서관이라 볼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 혹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할지 또는 공공도서관처럼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창구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주민 서비스를 강조하는 도서관이라면 지역의 공공도서관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지역대표도서관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미국의 주 도서관 기능과 서비스 내용 분석으로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서비스 방향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주 도서관의 서비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주 도서관에 대한 연구

미국 도서관협회(ALA)에서는 1985년 주 단위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표준을 발표하였다 (ALA 1985). 여기에 강조된 내용은 도서관간 상호협력에 대한 부분이다. 연방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각 도서관과의 협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 주 도서관의 기능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다만 인터넷 정보기술이 첨가되었다.

근래에 들어 주 도서관 역할에 대한 몇몇 연구가 발표되었다(Cooper 2004; Oder 2002; Kent 2002; Gleaves 1994). 이들 연구는 주로 미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주 도서관의 역할은 크게 미국 형태와 호주 형태로 구분된다. 호주의 주 도서관은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주 도서관이 많은 장서를 소장하면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개념상 분관으로 운영된다. 반대로 미국은 지방분권적인 형태로 주 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중앙집권적 기능으로 호주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정보 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주 도서관에서 관련된 장서를 소장하고 지역 공공도서관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Cooper 2004). 이는 호주가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 도서

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유사한 이민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이민자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지역 공공 도서관 담당이며, 주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텍사스 주 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에 한하여 인증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Oder 2002).

능을 담당하고 있다. 워싱턴 DC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 도서관(the Martin Luther King, Jr. Memorial Library), 하와이 주는 하와이 주 공공도서관 시스템(Hawaii State Public Library System), 메릴랜드 주는 볼티모어에 있는 프랫 자유 도서관(Enoch Pratt Free Library)의 중앙관이 주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주 도서관은 주에 따라서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 주 도서관 현황

2.1 운영주체

주 도서관은 대부분 주 행정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전체 주 도서관의 62.7%인 32개관이 주 행정부의 특정 부서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3.3%인 17개관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NCES 2006b). 하지만, 하와이 및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에는 주 도서관이 없고 공공도서관이 주 도서관 기

2.2 장서

2005년 현재 51개 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살펴보면, 평균 46만 여권이다(NCES 2006a). 하지만 지역간의 격차는 매우 커다. 뉴욕 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260여 만권이나 되지만, 멜라웨어 주 도서관에서는 단지 1,700여권의 도서만을 소장하고 있다. 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양의 차이는 '연방정부 간행물 보존 도서관 프로그램(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FDLP)'을 수행

〈표 1〉 주 도서관 운영 주체

운영 주체	도서관 수	비율(%)
입법부	2	3.9
행정부	49	96.1
독립기관	17	33.3
주지사 소속	3	5.9
위원회 소속	14	27.5
부서소속	32	62.7
교육부	13	25.5
문화부	5	9.8
국무부	5	9.8
기타	9	17.6
합계	51	100

출처: NCES.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하는 도서관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메사츄세츠,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유타 등의 주 도서관은 소장 도서양이 10만권 미만으로 이들 주 도서관은 FDLP를 수행하는 도서관이 아니었다.

주 도서관의 기능적인 관점으로 도서관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문서 소장 건수를 살펴보면 주 도서관 평균 53만 여건 소장하고 있다. 정부문서 역시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 캘리포니아 주 도서관은 450만건의 정부문서를 소장하고 있었지만,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미네소타, 뉴욕, 오레곤,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주 도서관에서 정부문서를 전혀 소장하고 있지 않다(NCES 2006b). 이는 주 문서관(state archives)과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인디아나 등의 주 도서관은 주 문서관이 존재하지만 주 정부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주 도서관 소장 장서 규모를 공공도서관과 비교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봉사대상인구가 백만명 이상인 도서관의 평균 도서수는 약 400만권이며, 봉사대상인구가 10만-25만인 도서관의 평균 도서수는 약 35만권, 그리고 봉사대상인구가 1만-2만5천명인 도서관의 평균

도서수는 약 5만 5천권이었다(NCES 2006c). 이를 본다면 주 도서관의 도서수는 봉사대상인구가 10만 - 25만 사이의 공공도서관 도서수와 비슷하다. 미국 전체에서 봉사대상인구가 10만 - 25만 사이의 공공도서관은 332개관이 되며, 봉사대상인구가 25만 이상인 공공도서관이 176개관이나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 도서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3 이용

2005년 1년 동안 주 도서관 이용자의 평균 수¹⁾는 약 3만3천명이었다(NCES 2006a). 주 도서관별로 살펴보면, 워싱톤 주 도서관에 이용자가 가장 많았는데 33만여명이나 되어 주 도서관 평균의 10배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메사츄세츠 주 도서관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용자가 100명 미만에 불과하였다(NCES 2006b). 이를 공공도서관 이용과 비교하면, 봉사대상인구가 백만명 이상인 도서관의 연평균 이용자는 약 650만명이며, 봉사대상인구가 1만-2만5천명인 도서관의 연평균 이용자는 약 8만7천명이 된다(NCES 2006c). 이는 주 도서관에 따라서는 소규모 지역공공도서관보다 더 이용자가 적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주 도서관 평균 소장 장서

	도서	오디오	비디오	구독잡지	정부문서
수량	460,995	4,080	3,119	1,020	537,265

출처: NCES.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1) 2005년 1년 동안 주 도서관 이용자 수는 1,705,181명이었으며, 이용자 수는 주 도서관의 활동이나 회의에 참가한 사람 및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주 도서관의 평균 대출 도서의 수²⁾는 5만7천여권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워싱톤 주 도서관은 1년동안 76만여권이 대출된 반면에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메사추세츠, 유타, 위스콘신, 와이오밍 주 도서관의 경우에는 1천 권 미만이 대출되었다(NCES 2006b). 이들 중 텔라웨어, 조지아, 메사추세츠 주 도서관은 소장 장서가 1만권 미만으로 현실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메인 주와 테네시 주 도서관은 소장 도서 수에 비해 대출 도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상호대차 도서는 많지 않았다. 이 사례는 주 도서관이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비교하면 봉사대상인구가 백만명 이상인 도서관의 연평균 대출 도서는 9백만권이며, 봉사대상인구가 1만-2만5천명인 도서관의 연평균 대출 도서는 약 12만권이나 되었다(NCES 2006c). 대부분의 주 도서관의 대출 도서가 10만권 미만임을 비추어 볼 때, 소규모 공공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서비스³⁾는 도서관 당 평균 2만여건이 이루어졌으며, 플로리다 주 도서관이 10만여건으로 가장 많은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다호,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주 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는 1,000건 미만에 불과하였다(NCES 2006b). 공공도서관과 비교하면, 봉사대상인구가 백만명 이상인 도서관은 연 평균 약 2백60만건이며, 봉사대상인구가 1만 - 2만5천인 경우는 약 1만여건이었다(NCES 2006c).

상호대차의 경우 베몬트 주 도서관은 60만여 건을 대출하였지만, 델라웨어와 메사추세츠 주 도서관은 대출 건수가 100여건 미만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상호대차 신청은 노스다코타 주 도서관에서 2만4천여건으로 가장 많았다(NCES 2006b). 공공도서관의 경우, 봉사대상인구가 백만명 이상인 도서관은 연 평균 약 9천건이며, 봉사대상인구가 1만 - 2만5천인 경우는 약 4천5백여건이었다(NCES 2006c).

주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평균 이용현황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들어난다. 주 도서관의 경우 정보서비스와 상호대차가 평균적으로 공공도서관보다 많지만, 이용자 수와 대출 도서 수는 공공도서관에 비해 평균적으로 적었다. 이는 주 도서관의 역할이 지역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 도서관 평균 이용

	이용자	대출도서	정보서비스	상호대차	
				대출	신청
수량	33,435	57,261	22,219	8,291	3,752

출처: NCES.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통계를 기초로 재 계산하였음.

- 2) 대출도서 수는 이용자 개인에게 주 도서관을 통해서 대출 된 도서 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상호대차를 통해 타 도서관에서 빌린 도서 수도 포함됨. 하지만, 타 도서관에 대출된 도서는 포함되지 않음.
- 3) 정보서비스는 주 도서관 직원이 하나 이상의 정보원을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한 활동을 의미함.

2.4 서비스 거점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도서관의 형태는 중앙관, 분관, 이동도서관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콜로라도 주는 중앙관이 없고 2개 곳의 분관만이 존재하고 있다. 주 도서관 대부분은 일반이용자와 주정부공무원을 봉사대상 집단으로 삼고 있었으며, 지체장애인, 교도소 및 기타 주 기관에 거주하는 주민도 봉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 도서관이 있다. 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뉴멕시코 주에서만 존재하였는데 이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동도서관은 과거에 아이다호 주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기도 하였다(Wilson 2006).

2.5 서비스 인력

2005년 현재 주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미 전역에서 3,500여명이었으며, 이중 과반수 이상인 1,800여명이 도서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주 도서관에 근무 인력의 평균은 약 70명 정도이나, 주마다 그 차이는 매우 커다. 로드 아일랜드 주 도서관의 경우는 근무하는 인력이 13.7명에 불과하나, 뉴욕 주 도서관은 211명이나 되었다(NCES 2006b). 비록 뉴욕 주 도서관의 근무 인력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대규모 공공도서관에 비하면 그 인력은 많지 않다. 봉사대상인구가 백만명 이상은 공공도서관의 근무 인력은 평균 약 650명이나 되며, 봉사대상인구가 1만~2만5천인 경우는 약 8.8명이다(NCES 2006c).

〈표 4〉 주 도서관 서비스 거점

봉사대상	중앙	분관	이동도서관	합계
일반이용자	46	35	4	85
주정부공무원	46	25	4	75
지체장애인	33	21	4	58
교도소	15	16	0	31
기타 주 기관 거주자	13	11	0	24
합계	47	71	4	122

* 도서관에 따라 여러 봉사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합계가 다름

* 콜로라도, 워싱톤DC, 하와이, 메릴랜드는 주 도서관 중앙관이 없음.

출처: NCES.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표 5〉 주 도서관 인력

	행정	도서관발전	도서관서비스	기타	합계
인원	464.6	645.3	1,873.9	956.8	3,580.6
비율(%)	13	18	52.3	16.7	100

출처: NCES. Supplemental State Tables to NCES 2007-300. http://nces.ed.gov/pubs2007/2007300_s.pdf

2.6 예산

2005년 현재 미 전체 주 도서관의 예산은 약 10억달러이며 그중 30%인 3억달러는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되며, 70%인 7억달러는 해당 주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용되었다. 도서관 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는 전체의 8%에 불과하였다. 미국 공공도서관 통계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의 비율이 13.2%를 차지하고 있었다(NCES 2006c). 이는 인구 1인당 평균적으로 약 4달러씩 도서관 자료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 도서관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에 훨씬 못 미치는 인구 1인당 0.08달러에 불과하였다. 워싱턴 주 도서관의 경우 2005년도 자료구입비가 약 60만 달러였다. 하지만, 인근의 시애틀공공도서관의 2005년도 자료구입비는 약 3백만 달러로 거의 주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5배에 달하였다(Seattle Public Library <http://www.spl.org>). 이처럼 주 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대형 공공도

서관보다 크게 적은 것은 주 도서관의 핵심 기능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공공도서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공공도서관 협력체에 15% 이상 지원되었다. 또한 도서관 건축에 대한 지원도 약 5%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주 도서관의 재정지원은 다양한 분야로 세분되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도서관에 지원되어 주 전체 주민들이 가능한 한 평등하게 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 특성

미국의 주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장장서 혹은 인력 측면에서 주 도서관은 대형 공

〈표 6〉 주 도서관 예산

	입금	자료구입비	기타	합계
금액(천 \$)	172,180	24,716	113,103	309,999
비율(%)	55.5	8.0	36.5	100
인구1인당(\$)	0.58	0.08	0.38	1.05

출처: NCES.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표 7〉 주 도서관의 도서관 지원 현황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협력체	기타도서관	기타도서관 협력체	개별기관/ 도서관	도서관건축	기타지원	합계
금액(천 \$)	409,407	112,302	13,694	62,852	59,580	39,423	36,144	733,493
비율(%)	55.8	15.3	1.9	8.6	8.1	5.4	6.7	100
인구1인당(\$)	1.38	0.38	0.05	0.21	0.20	0.13	0.12	2.47

출처: NCES.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공도서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규모이다. 앞 장의 주 도서관 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반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서비스도 있지만, 주 도서관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도서관 서비스의 특성을 서비스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로 여기에는 주 주민과 주 정부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되며, 둘째는 주에 위치한 도서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3.1.1 지역 및 역사정보 서비스

대부분의 주 도서관은 주에 대한 역사 정보 혹은 주에서 발행된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내용은 역사, 정부, 인물, 문학, 장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태별로 도서, 신문, 잡지, 팜플렛, 지도, 포스터, 사진 등으로 나뉘며, 주에 따라 이러한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다. 미국 전체 주 도서관의 72.5%인 37개 주 도서관에서 지역 및 역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CES 2006b).

주 도서관의 주요 기능으로 지역 및 역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역할이라

생각할 수 있다. 미국 국가대표도서관인 Library of Congress에서는 American Memory라는 명칭으로 미국에 대한 역사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하고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시 혹은 카운티(county)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에 관한 역사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의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Special Collection에 시애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주에 따라서 지역 및 역사정보를 수집과 제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주 도서관 명칭을 Tennessee State Library & Archives처럼 archives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오레곤 주의 경우에는 미국 원주민 도서관(tribal library)과 협력하여 지역정보 보존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Dahlgreen 2006).

주 도서관에서 지역 및 역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명칭은 약간씩 다르지만⁴⁾ 주 역사와 주 문서를 다루는 기관에서 역사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3.1.2 가계 정보 서비스

가계(genealogy) 정보 서비스는 주 도서관의 공공 서비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독립 공간을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계 정보원은 인구 통계 조사표, 군사 기록, 지

4) 하와이 주를 제외한 13개주의 역사정보 제공 기관: Alabama Department of Archives and History, Arkansas History Commission, Delaware Public Archives, Idaho State Historical Society, Kentucky Historical Society, Massachusetts Archives, Ohio Historical Society, Oklahoma State Archives and Record Management, South Dakota State Historical Society, Utah History Research Center, Vermont State Archives, West Virginia Division of Culture and History, Wisconsin Historical Society

방정부의 기록, 교회 기록 등이 포함된다. 미국 전체 주 도서관의 43.1%인 22개관에서 가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CES 2006b).

가계 정보 서비스 역시 역사 정보와 마찬가지로 주 역사와 주 문서를 다루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나, 주에 따라서는 주 도서관과 주 문서관에서 동시에 가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주의 경우 알래스카 주 도서관과 주 문서관에서 동시에 가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주 도서관의 경우 참고정보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주 문서관에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별화하고 있다.

가계 정보는 의회도서관과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소장하고 있지만 주 도서관이 중심에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가계 정보는 너무 방대하여 주 단위로 구분할 수 밖에 없으며, 지역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주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가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3.1.3 점자 및 녹음자료 서비스

1931년부터 시작된 의회도서관의 '시각 및 신체장애인 국가도서관서비스'(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 Physically Handicapped)는 미 전역의 서비스망을 가지고 있는데, 각 주마다 서비스 도서관이 지정되어 있다. 소장자료 형태로는 도서 및 잡지에 대한 녹음자료와 점자자료로 이루어지며 이용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대부분의 주 도서관은 지역서비스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나 공공도서관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는 플로리다 점자 및 녹음도서 도서관 서비스 국(Florida Bureau of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 Services), 아이오와 주는 아이오와 시각장애인부(Iowa Department for the Blind) 소속의 시각 및 신체장애인 도서관(Library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펜실베니아 주는 필라델피아 자유도서관(Free Library of Philadelphia)에서 서비스를 담당한다(NLS 2006).

점자 및 녹음자료 서비스는 보통 Talking Book, Braille and Talking Book, 혹은 Library for the Blind & Physically Handicapped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 차이점은 소장자료가 녹음자료만을 소장하고 있는지 혹은 점자자료도 함께 소장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1.4 주 의회 및 정부에 대한 서비스

주 도서관에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간행자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연방정부 간행물 보존 도서관 프로그램(FDLP) 혹은 주정부 간행물 보존 프로그램(SPDP)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정부 간행물 보존 도서관 프로그램은 미 연방의 의회, 사법, 행정 3부에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미국 전역의 1,250개 도서관에 배포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GPO Access <http://www.gpoaccess.gov/fdlp.html>). 그 밖의 서비스로는 주 통계에 관한 내용이나 각 부서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이 있다.

3.2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3.2.1 도서관 발전 부서

도서관 발전 부서는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 주 도서관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도서관 지원기관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념적으로 보아 도서관 발전 부서는 주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만 존재하여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도서관 발전기금 제공, 둘째, 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셋째, 도서관 발전계획/평가/연구, 넷째, 도서관 운영 자문, 다섯째, 도서관 통계데이터 수집 및 배포, 여섯째, 통신비용 경감 프로그램, 일곱째, 사서 자격증 및 도서관 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표준/기준 제정 등이 포함된다(NCES 2006a).

이중 주 도서관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도서관 발전기금을 받아서 주(state)에 있는 각종 도서관에 분배하는 서비스는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안(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LSTA)’에 근거를 두고 실행된다. LSTA는 1996년 공포되고 2003년 수정된 법안으로 도서관, 지역사회, 각종 기관들 사이에 자원공유를 위한 전자 네트워크 구축과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과 지역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LSTA <http://www.library.ca.gov/assets/acrobat/LSTADescription.pdf>). 이 서비스는 모든 주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주 도서관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통신비용 경감 프로그램 운영은 E-rate이라고도 하며 학교와 도서관을 위한 Universal Service Rate Discount라고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에 근거를 두고 학교와 도서관에서 통신, 인터넷 등의 첨단 통신시설을 쌍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Washington State Library <http://www.secstate.wa.gov/library/libraries/libDev/technology/erate.aspx>). 이 서비스 역시 모든 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이다.

사서 자격증은 전체 주 도서관의 45.1%인 23개 도서관⁵⁾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 밖의 주의 경우는 자격증을 담당하는 부서나 주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사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각 주의 편의에 따라 업무를 모으거나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

3.2.2 이용자 서비스 지원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주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여름 독서프로그램이다. 여름 독서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주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NCES 2006b), 미국의 43개 주(state)가 가입한 공동 여름 도

5) 23개 주 도서관은 태네시, 인디애나, 메사츄세츠, 몬타나,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아이오와, 메릴랜드, 뉴욕,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워싱턴, 캔터키, 미시간, 네바다, 베몬트 주의 주 도서관임.

〈표 8〉 도서관 발전과 관련된
주 도서관 서비스 내용

내 용	도서관 수	비 율
도서관 발전기금 제공	51	100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50	98
도서관 계획/평가/연구	51	100
도서관 운영 자문	50	98
도서관 통계데이터 수집	51	100
통신비용 경감 프로그램	51	100
도서관 인증	13	25.5
사서자격증 교부	23	45.1
도서관 관련법 제고	47	92.2
주 표준/기준 제정	42	82.4
공공관계 증진	43	84.3

출처: NCES.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서관 프로그램(Collaborative Summer Library Program) 콘소시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주 도서관에 배포하고 각 주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 배포한다. 이 프로그램은 콘소시움에 가입한 주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CSLP <http://www.cspreads.org/index.html>).

주 도서관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관종의 도서관에 제공하는 상호대차 레퍼럴 서비스(Interlibrary Loan Referral Service) 역시 주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상호대차 레퍼럴 서비스는 한 도서관에서 요청한 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파악하거나 혹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 요청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서지정보 서비스 센터, 지역 시스템, 콘소시움, 정보자원 센터 등을 포함한다(NCES 2006a).

참고정보 레퍼럴 서비스는 기관(혹은 집단)에 대한 정보나 혹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표 9〉 이용자 서비스 지원에 대한
주 도서관 서비스 내용

내 용	도서관 수	비율
여름 독서프로그램 지원	49	96.1
정보 활용교육 프로그램 지원	40	78.4
정보 레퍼럴 서비스	41	80.4
협력적 디지털 프로그램	19	37.3
버추얼 정보서비스	23	45.1
협동수서	21	41.2
상호대차 레퍼럴 서비스	47	92.2
OCLC 접속 단체 이용	33	64.7
장서보존서비스	15	29.4
서지레코드 변환	19	37.3
종합목록 발전 프로그램	34	66.7

출처: NCES.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를 지역 도서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그 기관의 활동, 서비스, 부서, 일정 등의 포함된다 (NCES 2006a). 이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힘든 주 단위의 기관이나 집단에 대해 주 도서관에서 지역 도서관 혹은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정보 요구를 대행한다. 동시에 주 단위의 버추얼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24시간 웹 채팅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요청에 답변하기도 한다.

4.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 서비스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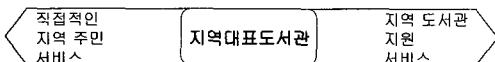
4.1 서비스 방향

미국 주 도서관의 현황 분석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주 도서관의 규모는 봉사대상인구가 10만 - 25만명 사이의 공공도서관 규모와 비슷하다. 하지만, 주에 따라서 주 도서관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주 도서관의 핵심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과 주 주민들을 위한 주 역사 및 가계정보 제공,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서비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 '도서관법' 제23조에서 제시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서,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과 타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를 보존하는 업무이다. 둘째는 지역 도서관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에 대한 업무이다.

미국 주 도서관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이 업무들을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이 동일하게 수행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효과적인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대표도서관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 할 것인지 혹은 지역의 도서관 지원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들 서비스는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수행해야하지만,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는 지역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위의 두 가지 방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지역대표도서관은 개념적으로 시·도의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으며, 지역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역대표도서관 공간이 지역의 공공도서관보다 상대적으로 커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동시에 장서양도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주 도서관 사례에서 본다면 미국은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이 발전된 국가이며 주 도서관은 주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주에 따라서 주 도서관 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소규모 공간만을 유지하는 주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미국 주 도서관의 주민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역사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주 도서관에서는 주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 역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 및 보존하여 제공한다.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한정된 지역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 도서관은 주 전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차별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지역 대표도서관에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시·도 전체를 포함하는 역사 혹은 지역정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경기도 역사와 지역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역사 혹은 지역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과 중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별성을 고려하면 주 도서관은 지역의 역사 및 지역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지만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역사 및 지역정보 수집과 제공이 부차적이며 전체 예산에서 일부분만 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역사 서비스는 자료 보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역할은 대학도서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문화유산은 국가대표도서관에서 보존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한정될 것이다. 결국 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그 지역의 역사와 지역정보를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일 것이다. 미국 주 도서관은 장애인들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 도서관에서 장애인 가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배달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료를 배달하는 방법은 각 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주(state)의 몇몇 도서관이 장애인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편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2-3일내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 집에 전달할 수 있으며, 자료를 몇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 놓는 것이 서비스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 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지역대표도서관도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전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3 공공도서관 지원 서비스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공도서관의 지원 서비스는 크게 예산 지원, 서비스 향상, 훈련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예산 지원은 시·도청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했던 업무였지만,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도민 전체가 지역적인 차별없이 공평하게 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도서관을 위한 지원이다. 예산 지원은 공공도서관이란 특정 지역의 주민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시·도 전체 주민의 도서관이란 개념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도서관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네트워크으로 연결된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이기 때문이다. 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시·도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장서구입, 도서관 신/개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안(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LSTA)'과 같은 공공도서관 예산 지원법이 선결되어야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시·도민 모두가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도서관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공

공도서관 서비스와 공공도서관 기준과 차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인을 파악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공공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에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도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정보센터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를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 및 배포되는 모든 자료를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소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모두가 지역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참고정보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5. 결 론

미국 주 도서관의 서비스를 분석하면 크게 지역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와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의 핵심은 재정적인 지원과 효

과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지역 정보 및 역사 정보 서비스, 가계 정보 서비스, 그리고 점자 및 녹음자료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미국 주 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모든 관종의 도서관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관이며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대부분의 주 도서관에서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서비스를 제안한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로 지역 역사정보 제공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서비스로 예산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로 지방정보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연구과제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주 도서관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현장에 어떤 점이 적용 가능할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주 도서관 서비스가 주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 관련 기관, 도시화 정도, 인구 밀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5. *Standards for library functions at the state level*. 3r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Collaborative Summer Library Program/CSLP. [cited 2007. 3. 10].
<http://www.csplreads.org/index.html>.
- Cooper, Debra. 2004. "Beyond four walls: adult literacy services in Queensland Public Libraries."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17(3): 156-64.
- Dahlgreen Mary K. 2006. "The Oregon collaborative project: Tribal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nd the Oregon State Library." *OLA Quarterly*, 12(4): 16, 24.
- Gleaves, Edwin S. 1994. "Libraries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the role of state library agencies, network planning in Tennessee." *Tennessee Librarian*, 46(4): 9-24.
- GPO Access. [cited 2007. 3. 5].
<http://www.gpoaccess.gov/fdlp.html>.
- Kent, Jacqueline. 2002. "Creating lives: the role of the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in the creative process of biography." *LASIE*, 33(1): 83-90.
- NCES. 2006a. *State Library Agencies: fiscal year 2005*. [cited 2007. 3. 2].
<http://nces.ed.gov/pubs2007/2007300.pdf>.
- NCES. 2006b. *Supplemental State Tables to NCES 2007-300*. [cited 2007. 3. 2].
http://nces.ed.gov/pubs2007/2007300_s.pdf.
- NLS: Address list for all libraries. [cited 2007. 3. 5].
http://rs9.loc.gov:7778/pls/nldp/adr_search_res.
- Order, Norman. 2002. "Challenges big as Texas." *Library Journal*. 127(14): 54-6.
- Seattle Public Library. Library Use in 2005. [cited 2007. 3. 5].
http://www.spl.org/default.asp?pageID=about_history_factsheets.
- The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 [cited 2007. 3. 21].
<http://www.library.ca.gov/assets/robot/lsta/LSTADescription.pdf>.
- Washington State Library. *E-Rate information for public libraries*. [cited 2007. 3. 10].
<http://www.secstate.wa.gov/library/libraries/libDev/technology/erate.aspx>.
- Wilson, Richard A. 2006. "The Idaho State Library-1901 to 2005." *PNLA Quarterly*, 70(2): 10, 19.

〈부 록〉

운영기관	주(state) 이름
입법부	애리조나, 테네시
행정부	49
독립기관	17
주지사 소속	캘리포니아, 인디아나, 캔스اس
위원회 소속	알라바마, 커네티컷, 워싱톤DC*, 메인, 메사츄세츠, 미시시피, 몬타나,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부서소속	32
교육부	알라스카, 아칸사스,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오와, 매릴랜드*,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타, 펜실베니아,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문화부	루이지애나,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국무부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주리, 위싱טון
기타	조지아(대학시스템소속), 아이아호(교육청), 켄터키(교육청), 미시간(역사예술도서관부), 네바다(문화업무부), 뉴저지(주대학 소속), 로드아일랜드(행정부), 베몬트(행정부), 와이오밍(행정정보부)
합계	51

*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주 도서관 업무를 담당함